#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② 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해 회사의 금융투자업등 업무와 관련있는 법인의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의 정보교류통제 담당부서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인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인 경우에는 특정증권을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다. 단, 정보의 일반대중에 대한 공개성 또는 투자계약에 따른 정기적인 정보공개 사항에 따른 경우에는 미공개 중요정보에서 제외한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③ 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내부통제기준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④ 제1항제3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5영업일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3.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간 제공하는 정보로서 1개월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교류차단 담당 부서에서 확인한 정보. 다만, 회사의 정보교류차단 담당 부서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으로 요청한 경우 제외함.

4.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⑤ 임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3.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 · 운영”제1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① 회사는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겸영·부수 업무, 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설정한다.

1. 고유재산운용
2. 집합투자업
3. 기타 회사가 정보교류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3.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 · 운영

① 회사는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회사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컴플라이언스팀으로 한다.

② 회사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회사의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의 총괄책임임원은 준법감시인으로 한다.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정보교류통제 업무 중 일부를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해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부과함에 있어 보다 강화된 준수의무를 적용하여야 한다.

## 4.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5.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무 공간의 분리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4.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6.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제1항, “7. 예외적 교류의 방법”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①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이하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이라 한다)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회사의 상시 정보교류 허용임원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감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7. 예외적 교류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1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 8. 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① “7. 예외적 교류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9.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①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 10.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①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 및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다. 단, 정의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

| 구분 | 이해상충 유형 | 대응방안 |
|---|---|---|
| 임직원 ↔ 고객 | 임직원의 개인 투자(상장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행위 |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시에만 거래 가능 |
| 임직원 ↔ 고객 | 재산상 편익제공 및 수령 행위 | 컴플라이언스팀의 확인 및 승인에 따른 업무처리 |
| 회사 ↔ 고객 | 펀드재산으로 회사가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행위(dumping) | 회사가 거래 결정권을 가진 경우 매수 금지 (3개월 이내 매수 금지) |
| 회사 ↔ 고객 |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펀드에서 매수하거나 펀드에서 보유한 자산을 회사가 매수하는 행위 | 자기거래 금지 |
| 고객 ↔ 판매사 | 투자중개업자의 수익확대를 위해 펀드재산으로 지나치게 빈번하게 매매하는 행위 | 매매회전율 자산운용보고서 기재<br>분기별 투자중개업자 점검 |
| 고객↔중개업자 | 펀드재산으로 펀드판매나 조사보고서의 대가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 지불 | 분기별 투자중개업자 점검 및 대량 매매시 승인 절차 |
| 고객 ↔ 고객 | 집합투자재산 정보의 제공 | 컴플라이언스팀의 승인에 따른 정보 |

| | | |
|---|---|---|
| | | 제공 |
| 고객 ↔ 고객 | 집합투자기구간의 자산거래 | 제한적 상황에서만 준법감시인의 확인 및 승인 시에 진행 |
| 회사 ↔ 고객 | 의결권의 행사 | 내부 자산운용기준에 따른 투자자의 이해에 반하는 행사 금지/ 의결권행사시 컴플라이언스팀 승인 |

## 11.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회사는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다음의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관리 절차를 강화하여야 한다.

1. 고객이익 우선
-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 이해상충의 관리
-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이나 다른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는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및 이해상충방지 등의 효율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이 가능한 상환에 대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이해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
- 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등과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회사의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 임직원의 겸직

회사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 등 제3자의 임직원을 회

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13. 임직원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2.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할 사항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부당 이용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 개정시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